의안 번호	89

제156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(2026.10.28.)

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
(문화환경도시위원회)

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10. 28.(수)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. 10. 15.

나. 발 의 자: 백승규 의원 등 22명

다. 회부일자: 2026. 10. 20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6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(2026. 10. 28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(의안번호 제89호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: 백승규 의원)

○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원시와 관내 경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5조제3항)

나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창원시 관내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업을 추가함.(안 제7조제1항제5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2) 「국토기본법」 제13조 및 「도시개발법 시행규칙」 제9조

나. 조례안예고(2026. 10. 15.~10. 21.) 결과: 의견 없음

다.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서효인)

가. 개정목적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관내 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,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과 연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○ **안 제5조제3항**은

-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, 범죄 발생 현황과 지역별 치안 여건 등 현장 정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 특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시설물 설치 및 공간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별 범죄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요한 만큼,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안 제7조제1항제5호는
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내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, 경찰의 현장 경험과 범죄예방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,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경찰서의 협조 요청 사업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효과와 사업의 필요성, 시급성 및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○ 안 제9조는

- 기존의 ‘창원 교육지원청, 창원중부경찰서’를 ‘창원교육지원청, 창원시 관내 경찰서’로 변경하는 사항으로, 관계 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협력 대상을 특정 경찰서에서 관내 경찰서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 이를 통해 지역별 범죄 취약요인 및 치안 여건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협의체계 구축 대상이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관내 경찰서(5개소)로 확대될 경우, 실무적으로 협의 대상 및 창구 다변화로 인한 창원시의 행정적 부담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, 관내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업을 사업 대상에 추가하는 등 창원시와 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,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**개정의 필요성이 인정**됨.

○ 아울러 관계 기관의 협력 범위를 관내 경찰서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경찰의 협조 요청 사업이 창원시의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우선순위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,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, 시의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, 양 기관의 역할 분담 원칙을 명확히 하여 창원시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과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○ 또한, 협력체계 구축 대상이 관내 5개 경찰서로 확대되는 만큼, 창구 다변화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무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구축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요지: 기재 생략

7. 토론 요지: 없음

8. 심사 결과: **원안 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